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22
------	------

2022. 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3월 10일, 이종환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3월 1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3.3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종환 의원)

#### 1. 제안이유

-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 여가선용, 유대관계 형성 등의 순기능과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볼 때 체육활동의 적절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견고히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6의2호 신설)

나.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6조 제1호의2 신설)

##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견고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운영 현황

- 현행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지도하기 위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운영’하고 있음.
- 생활체육지도자는 시민의 적극적 체육활동을 유도하고자 주민센터, 체육시설, 경로당 등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서울시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452명으로 일반 178명, 어르신 159명, 유소년 6명 및 장애인 109명이 각각 25개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음.

### <서울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현황>

구분 (명)	장소	지도대상
<b>계 (452명)</b>		
일반지도자(178명)	공공체육시설, 복지시설, 자치센터, 중·고등학교 등	전 연령
어르신지도자(159명)	경로당, 노인복지관, 양로원 등	만 65세 이상
유소년지도자(6명)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아동시설 등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
장애인지도자(109명)	주간보호센터, 작업보호장, 복지관, 특수학교, 공공체육시설 등	전 연령

-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뉴딜일자리의 일환인 계약직 신분으로 기본급을 국비·시비(일부 자치구 구비 매칭)<sup>1)</sup> 매칭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처우개선을 위해 현장지도활동수당, 휴일근무수당, 교통비, 정액급식비 등을 시비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음.

### <일반·어르신·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급여현황>

2022. 3월 현재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b>총 금액</b>	3,065,600	-휴일근무수당 및 근속수당 최대금액 반영 시	
<b>기본급여</b>	급여	2,082,000	-
	법정부담금	388,000	-
<b>수당 (시비)</b>	현장지도 활동수당	30,000~100,000	- 3년차이상 : 3만원/월 - 5년차이상 : 5만원/월 - 7년차이상 : 7만원/월 - 10년차 이상 : 10만원/월
	휴일근무수당	265,600	- 월 최대 16시간/ 시간당 16,600원 - 휴일 근무에 따른 해당자에 한해 지급
	교통비	100,000	-
	정액급식비	130,000	-

1) 현재 인건비는 국비(50%)+시비(50%)에서 국비(50%)+시비(25%)+구비(25%)로 개선중이며 자치구별 최소 74백만원에서 최대 134백만원이 분담될 예정임. 제수당(현장지도 활동수당, 휴일근무수당, 교통비, 정액급식비)4종은 기존과 같이 전액 시비로 지원할 예정임.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급여현황>

2022. 3월 현재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b>총 금액</b>	3,062,400	- 휴일근무수당 및 근속수당 최대금액 반영 시
<b>기본급여</b>	급여	2,082,000
	법정부담금	388,000
<b>수당 (시비)</b>	휴일근무수당	262,400
	근속수당	30,000~ 100,000
	교통비	100,000
	정액급식비	130,000
	초과근무수당	-

- 실상 생활체육지도자는 자치구별 주민 수요에 따른 생활체육 현장지도 등 자치구체육회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수당에 대한 지속적인 시-구 재원분담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속적인 처우개선 요구에 따라 문체부 생활체육지도자 가이드라인('20년 8월)을 근거로 서울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한 당사자·전문가 TF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 표준안」을 마련('21년 10월)하였음.

##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추진 절차>

- 표준(안) : 전환심의 기관(시체육회), 평가 기준(근무평가70, 활동평가 20, 면접10) - 전환절차			
정규직 전환심의표준(안) 배포 및 전환 채용 신청	생활체육지도자 면접평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개최 및 전환 심시 실시	생활체육지도자 근로계약서 작성

- 자치구체육회별 생활체육지도자 면접 및 시체육회 주관의 정규직전환 심의회 개최를 통해 연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예정임.

다. 생활체육지도자 용어 등 신설(안 제2조제6의2호, 안 제16조제1의2호 )

- ‘생활체육지도자’ 라는 정의규정은 「생활체육진흥법」<sup>2)</sup>의 용어를 준용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생 략)  <div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div>	제2조(정의) ----- -----.  6. (현행과 같음)  <b>6의2. “생활체육지도자”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b>

- 안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에서 시장이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할 근거를 명문화함.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생 략)  <div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div> 2. ~ 7. (생 략)	제18조(생활체육의 진흥) ----- ----- ----- -----.  1. (현행과 같음)  <b>1의2.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b> 2. ~ 7. (현행과 같음)

라. 개정의 타당성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는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권장·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를 규정하고 ‘체육지도자 육성’ 을 의무화 하고 있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또한 「생활체육진흥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책무’를 명시하고 있어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충분한 법적 타당성이 있음.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기본급여 인상 및 휴일근무수당 기준단가 현행화 ▲지도강습 활동복 지급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타당한 조치로 보임.
- 한편 2021년 국민생활체육조사<sup>3)</sup>에 따르면 전국 만 10세 이상 국민 9천명 중 주 1회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생활체육활동 참여율은 60.8%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전국 만 10세 이상 60세 이하 등록 장애인의 경우 생활체육활동 참여율은 20.2%로 전년 대비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체육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로 일반 20~30대 국민의 경우 온라인 동영상 자료, 운동 어플 등을 사용한 수치가 반영되는 반면, 중장년층과 노인층, 장애인의 경우 대면 체육활동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증진, 여가선용 등 삶의 질 향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긍정적 측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

3) 국민생활체육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년 10월부터 21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 의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종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22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3월 10일  
발 의 자: 이종환 의원(1명)  
찬 성 자: 경만선,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혜련, 노승재,  
박기열, 박순규, 안광석,  
황규복 의원(10명)

### 1. 제안이유

- 생활체육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유대관계 형성 등의 순기능과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체육활동에 있어 적절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바,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육성과 지원을 조례에 선언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6호의2)
- 나.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6조제1호의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활체육진흥법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생활체육지도자”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제16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 략)</p> <p><u>&lt;신 설&gt;</u></p>  <p>7. ~ 15. (생 략)</p> <p>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p> <p>1. (생 략)</p> <p><u>&lt;신 설&gt;</u></p> <p>2. ~ 7.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b>6의2. “생활체육지도자”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b></p> <p>7. ~ 15. (현행과 같음)</p> <p>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 ----- ----- ----- ----- -----</p> <p>--.</p> <p>1. (현행과 같음)</p> <p><b>1의2.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b></p> <p>2. ~ 7. (현행과 같음)</p>